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31,300,000	24,939,000
일반회계	750,000,000	22,500,000
특별회계	81,300,000	2,439,000
공기업특별회계	61,400,000	1,842,000
수도사업특별회계	39,900,000	1,197,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500,000	645,000
기타특별회계	19,900,000	597,000
수질개선특별회계	4,570,000	137,1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60,000	85,8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210,000	6,3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00,000	15,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90,000	17,700
치수사업특별회계	820,000	24,60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90,000	17,700
주차장특별회계	9,760,000	292,8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376,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